

## 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결과

가. 제안일자 : 2000. 1. 13

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00. 1. 13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제76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(2000. 1. 19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기획예산과장 박경선)

가. 제안이유

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방법 개정됨에 따라 조례제명과 일부용어를 변경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법제명 변경에 따라 조례제명 개정(안 제명)

(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 ⇒ 부천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)

“민자유치”를 “민간투자”로 용어개정(안 제1조 내지 제7조)

#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없음

### 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없음

나. 반대토론

없음

### 5. 심사결과

원안의결

### 6. 소수의견요지

없음

### 7. 기타 필요한 사항

없음

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271호
의결년월일	2000. 1. 21 (제76회)

제출년월일 : 2000. 1. 13

제출자 : 부천시장

 제안이유

-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제명과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

 주요골자

- 법제명 변경에 따라 조례제명 개정(안 제명)

(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 ⇒ 부천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)

- "민자유치"를 "민간투자"로 용어개정(안 제1조 내지 제7조)

### 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제명 중 "민자유치"를 "민간투자"로 한다.

제1조 중 "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7항"을 "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9항"으로 하고 "민자유치"를 "민간투자"로 한다.

제2조 내지 제7조 중 "민자유치"를 "민간투자"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구성) ①(생략) ②(생략)</p>	<p>부천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.....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4조제9항의 ..... 부천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..... ..... .....</p> <p>제2조(구성) ①(현행과 같음) ②(현행과 같음)</p>

③ 위원은 부천시의회 의원(각 상임위원회별 1인)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<u>민자유치사업</u>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부천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.	③ ..... ..... <u>민간투자사업</u> 에 ..... ..... .....
④(생략)	④(현행과 같음)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	제4조(기능) .....
1. <u>민자유치사업</u> 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	1. <u>민간투자사업</u> 과 .....
2. <u>민자유치시설사업</u>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	2. <u>민간투자시설사업</u> .....
3.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	3. .....
4.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	4. .....
5. 기타 <u>민자유치사업</u> 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	5. ..... <u>민간투자사업</u> 의 .....
제7조(간사 등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<u>민자유치업무</u> 담당부서의 장 및 <u>민자유치업무</u> 담당주사가 된다.	제7조(간사 등) ① .....
	..... <u>민간투자업무</u>
	..... <u>민간투자업무</u> .....
	..